

 금융위원회	<b>보 도 자 료</b>			• 생산적 금융 • 포용적 금융 • 신뢰받는 금융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

책 임 자	금융위 자본시장과장 안 창 국(02-2100-2657)	담 당 자	송 병 관 서기관 (02-2100-2643)
	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 라 성 채(02-3774-8505)		박 승 배 부서장 (02-3774-8690)
	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보 김 성 태(02-3774-9502)		이 호 성 부서장 (02-3774-9700)

**제 목 : 올해부터는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상장회사에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.**

- 감사의견 비적정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 -
- 금융위원회, 한국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유가증권시장·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 -

**■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상장회사의 재감사 부담을 대폭 완화**

①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에 **재감사를 요구하지 않고, 차기년도 감사의견을**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

\*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을 수정하는 것도 허용

②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한 개선기간을 **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**

**■ 상장회사의 부담은 완화하되,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철저히 정비**

①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도출(상장폐지사유 해소될 때까지) **매매거래를 정지**

② 감사의견 쇼핑을 제한하기 위해 **차기년도 감사는 지정감사인 감사 의무화**

③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**코스닥기업**의 경우 차기년도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받더라도 **상장적격성 실질심사**를 거쳐 상장유지여부를 판단

## I. 개정 배경

- 감사의견 비적정기업에 대한 재감사 요구가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\*으로 작용하여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

\* 재감사계약 체결의 어려움, 높은 재감사 비용 부담

- 또한,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(18.11.1)으로 감사인의 회계감사가 보다 엄격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에 추가적인 자구기회를 부여하여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

## II. 주요 내용

### 가. 현행 제도

- 감사의견 비적정(의견거절, 부적정, 범위제한 한정)기업은 실질심사 없이 상장폐지가 결정되며 즉시 매매거래가 정지
- 상장폐지 결정이 기업 및 주주에게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감안하여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 중
  - 이의신청시 동일한 감사인\*과 재감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해 6개월\*\* 이내(유가 1년)의 개선기간을 부여
    - \* 법정감사 보고서의 효력 일관성 및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동일한 감사인만이 감사보고서를 수정할 권한을 보유
    - \*\* 코스닥의 경우 부실기업 조기퇴출을 위해 보다 엄격하게 제도 운영
  - 6개월 이내에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된 경우 상장이 유지되고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
    - \* 다만, 코스닥의 경우 실질심사를 거쳐 기업의 계속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상장을 유지 (유가는 실질심사 없이 상장유지)
  - 감사의견이 비적정으로 유지된 기업은 정리매매 절차를 거쳐 상장폐지

## 나. 문제점

- 개선기간 부여의 전제조건인 재감사(동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보고서 수정)가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
  - ① 감사의견 수정을 위한 재감사 계약 체결이 어려운 측면
    - \* '15~'18년 중 감사의견 비적정기업 50사 중 10사(20%)는 재감사계약 거부
  - ② 정밀한 감사 필요성으로 인해 감사 비용이 증가\*
    - \* 재감사 수수료는 정기감사의 2.5배 수준이며, 포렌직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재감사비용은 더욱 증가
  - ③ 재감사를 받더라도 감사의견 변경이 용이치 않아 상장폐지되는 사례도 다수 발생
    - \* 감사의견 변경비율(%) : ('15) 57 ('16) 60 ('17) 73 ('18) 29
    -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('18.11월)으로 감사인의 책임이 강화된 만큼 감사의견 변경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

## 다. 개선방안

-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고 변경된 차기년도 감사인의 차기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 ☞ 감사의견이 2년 연속 비적정인 경우 상장이 폐지되는 효과
  -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감사의견 비적정시 ①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현 제도는 유지하고 ② 차기년도 감사는 지정감사인 감사로 한정
  - 코스닥기업은 차기년도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받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 유지여부 결정
  - 재감사 요구가 폐지되는 만큼 코스닥 기업의 개선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\*으로 코스피시장과 통일
    - \* 차기 감사보고서 의견으로도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될 수 있도록 차기 감사보고서 제출일까지 약 1년으로 개선기간 확대
  - 다만,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되는 경우 개선 기간 도래 전이라도 매매거래 정지 해제

## 【 감사의견 비적정기업 상장폐지 제도 개선 (코스닥) 】

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<a href="http://www.fsc.go.kr">http://www.fsc.go.kr</a>	<b>금융위원회 대 변 인</b> prfsc@korea.kr	 넓게 들었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
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**1. 개정규정 시행이후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이 상장폐지 사유 해소 방법은?**

- 개선기간 동안 ①현행과 같이 동일 감사인에 의한 재감사를 통해 감사의견이 변경(비적정 → 적정)되거나 ②재감사를 하지 않더라도 지정감사인에 의해 차기 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 상장폐지사유(감사의견 관련)가 해소됨

**2. 개정 규정 적용대상은?**

- 개정규정 시행('19.3.21) 이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기업부터 적용
  - 다만, 개정규정 시행 전 '18년도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4.1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소급적용

**3. 차기년도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나온 코스닥 기업에 추가적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하는 이유는?**

- 그간 코스닥시장의 경우 감사의견이 변경되어 상장유지된 기업 중 다수기업이 부실화\*되어, 감사의견이 변경된 회사에 대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적용 중 ('18.4월부터 시행)

\* '13~'17년 감사의견 변경기업(18사) 중 6사는 2년내 상장폐지, 5사는 실질심사